

FIP-2015-0014 (통권 제224호, 2015.12)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히든챔피언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히든챔피언 개요	2
① 정의	2
② 특징	3
III. 독일의 히든챔피언	6
① 현황	6
② 정책	6
IV. 한국 히든챔피언 육성방안	11
① 현황	11
② 문제점	15
③ 개선방안	19
< 참고문헌 >	23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산업정책팀 이명선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154 FAX : 02-6234-5390 E-mail : mslee@fki.or.kr

I. 검토배경

-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수출 강국의 입지 확보 필요
 -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는 '12년 기준 6천억 달러로, 미국(11조 달러)의 18분의 1, 일본(3조 6천억 달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
 - 내수시장 규모를 뛰어넘기 위해 독일 기업과 같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여 수출지향적 구조 유지 필요
 - * GDP 대비 수출 비중('14) : 독일 51%, 미국 13.5%, 일본 14.7%
- 제조업 수출 강국인 독일 경제의 경쟁력 원천은 히든챔피언
 - 독일 제조 기업은 글로벌 51개 산업 중 기계, 자동차부품 등 13개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3위 이내에 포함되어 세계시장을 선도
 - 헤르만 지몬 교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히든챔피언들이 독일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분석
 - * 소규모 히든챔피언 → 히든챔피언 → 챔피언으로의 성장 단계를 확립하여 국가 경제 견인

II. 히든챔피언 개요

- [정의] 히든챔피언은 헤르만 지몬(H. Simon) 교수가 1996년 처음 정의
 - 히든챔피언의 조건은 세계시장 지배력, 매출액 기준, 대중 인지도 등 3가지

< H. Simon의 히든챔피언 조건 >

조건	판단 기준
세계시장 지배력	세계시장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대륙 1위
매출액 기준	매출액은 50억 유로(한화로 약 6조 원) 이하
대중 인지도	낮은 인지도

- 히든챔피언의 매출액 기준은 EU·독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5천만 유로)의 100배를 상회하는 50억 유로(약 6조 원)로,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개념

● ● ● 요약 ● ● ●

- [특징] 히든챔피언 연평균 매출액(3억 2,600만 유로)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준이며, 전 세계 2,734개 히든챔피언 중 48%가 독일 기업
 - 히든챔피언 연평균 매출액(1995~'10)은 3억 2,600만 유로(약 4천억 원), 평균 기업 연령은 66년, R&D 투자 비중은 6%, 수출 비중은 62%
 - * 우리나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400억~1,500억 원 초과
 - 전 세계 2,734개의 히든챔피언이 존재하며, 이 중 48%(1,307개)가 독일 기업
 -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 히든챔피언 절반을 보유한 독일의 정책 및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 필요

Ⅲ. 독일의 히든챔피언

- [현황] 델로, 에네르콘 등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과반수 보유
 -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1,307개로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48%를 차지
 - 대표 사례는 델로(Delo), 에네르콘(Enercon), SAP, 셰플러(Schaeffler) 그룹 등
- [정책] 기업규모별 제약 없으며, 가업승계·R&D·판로개척 용이한 환경
 -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은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집단만을 규제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음
 - 배우자·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고세율은 약 323억 원 이상 30%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까지 세금공제 지원
 -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 시 기술 분야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지역별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어 산·학·연 기술협력이 용이한 환경
 - 판로개척 시 금융지원·정보제공 등의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 활용하여 수출·자회사 설립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Ⅳ. 한국 히든챔피언 육성방안

- [현황] 47개 법령 178개의 성장걸림돌, 가업승계·R&D 지원제도의 한계 등으로 독일과 같은 히든챔피언 강국이 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

● ● ● 요약 ● ● ●

-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가 증가하고, 지원제도는 감소, 총 47개 법령에 178개의 성장걸림돌 존재
- 가업상속 세율이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상속세 공제여부 및 공제한도가 기업의 규모나 업종, 선대경영인의 경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세액공제를 통해 혁신기술 개발,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또는 일부 기업에 혜택을 한정
- 해외시장정보·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할 중국·일본과의 역내무역 감소 추세
- [문제점] 우리나라 히든챔피언의 성과(매출액·업력 등)는 전 세계 히든챔피언 평균치에 비해 저조하며, 피터팬 증후군, 가업승계 곤란 등의 현상 존재
 - 우리나라의 히든챔피언 기업은 23개이며, 매출액, 업력, 수출 비중, R&D 비중 등이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평균치에 비해 저조한 편
 - 정부가 정립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은 세계적 기준과 상이
 - 피터팬 증후군, 성장단절, 가업승계 곤란, 기술혁신 저조 등의 현상 발생
- [개선방안] 기업의 지속성장, 가업승계, R&D 투자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 제고 및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
 -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피터팬 증후군·성장단절 문제 해소
 - 가업승계 통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제 개편과 기업 업력·규모 제약 철폐 등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혁신기술 R&D 및 기술협력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 세액공제의 열거주의식 규정 개편, 대기업의 기술이전 유인제도 등 마련
 - 해외 시장정보 제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로 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
 -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 제고 및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마련 필요

I. 검토배경

-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수출 강국의 입지 확보 필요
 -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는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
 - * 내수시장 규모('12, 달러, WB) : 美 11조, 日 3조 6천억, 中 2조 9천억, 韓 6천억
 - 내수시장 규모를 뛰어넘기 위해 독일 기업과 같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여 수출지향적 구조 유지¹⁾ 필요
 - * GDP 대비 수출 비중('14) : 독일 51%, 미국 13.5%, 일본 14.7%

- 제조업 수출 강국인 독일 경제의 경쟁력 원천은 히든챔피언
 - 독일 제조 기업은 글로벌 51개 산업 중 기계, 자동차부품 등 13개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3위 이내에 포함²⁾되어 세계시장을 선도
 - 헤르만 지몬 교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히든챔피언들이 독일 경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분석³⁾
 - * 獨 미텔슈탄트 : 종업원 500명 미만 및 매출액 5천만 유로(약 6백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업종에 따라 매출액 400억~1,500억 원 이하)에 해당
 - 소규모 히든챔피언(Small Hidden Champion)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 챔피언(Champion)으로의 성장 단계⁴⁾ 확립을 통해 국가 경제 견인

- 우리나라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 필요
 -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을 정립하고, 기술혁신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의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을 발표('14.10월)
 -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세계적인 기준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강소기업·강중견기업·강대기업으로의 지속적 성장 촉진 방안도 부족

- 본 보고서에서는 히든챔피언의 정의와 특징을 파악한 후, 독일 사례를 통해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환경과 비교 및 시사점 도출

1) 헤르만 지몬,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2012)
 2) POSRI, 위기 탈출의 해법, 독일 제조업에서 배운다(2012)
 3) 중기청·산업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2014)
 4) 이홍,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2014)

Ⅱ. 히든챔피언 개요

① 정의

- 히든챔피언은 헤르만 지몬(H. Simon) 교수가 1996년 처음 정의⁵⁾
 - H. Simon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의 조건을 세계시장 지배력, 매출액 기준, 대중 인지도 등 3가지로 정의

< H. Simon의 히든챔피언 조건 >

조건	판단 기준
세계시장 지배력	세계시장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대륙 1위
매출액 기준	매출액은 50억 유로(한화로 약 6조 원) 이하
대중 인지도	낮은 인지도

- 히든챔피언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개념
 - 헤르만 지몬이 정의한 히든챔피언의 매출액 기준은 50억 유로(약 6조 원) 이하로, EU 및 독일 중소기업 기준 5천만 유로(약 611억 원)의 100배를 상회
 - * 중소기업 기준 : (EU)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및 종업원 250명 미만, (獨 미텔슈탄트 Mittelstand(중소기업))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 및 종업원 500명 미만
 - 헤르만 지몬이 히든챔피언의 매출액 기준을 EU 및 독일의 중소기업 기준보다 훨씬 높게 설정한 것은 기업의 성장 단계 중시하기 때문

< 히든챔피언의 매출액 기준 설정 이유 >⁶⁾

- 단순한 규모 중심의 경계 설정보다는 히든챔피언이 강력하게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특징과 전략을 간직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히든챔피언의 경계는 중소기업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세계시장을 반영한다. 기업 규모를 파악할 때는 세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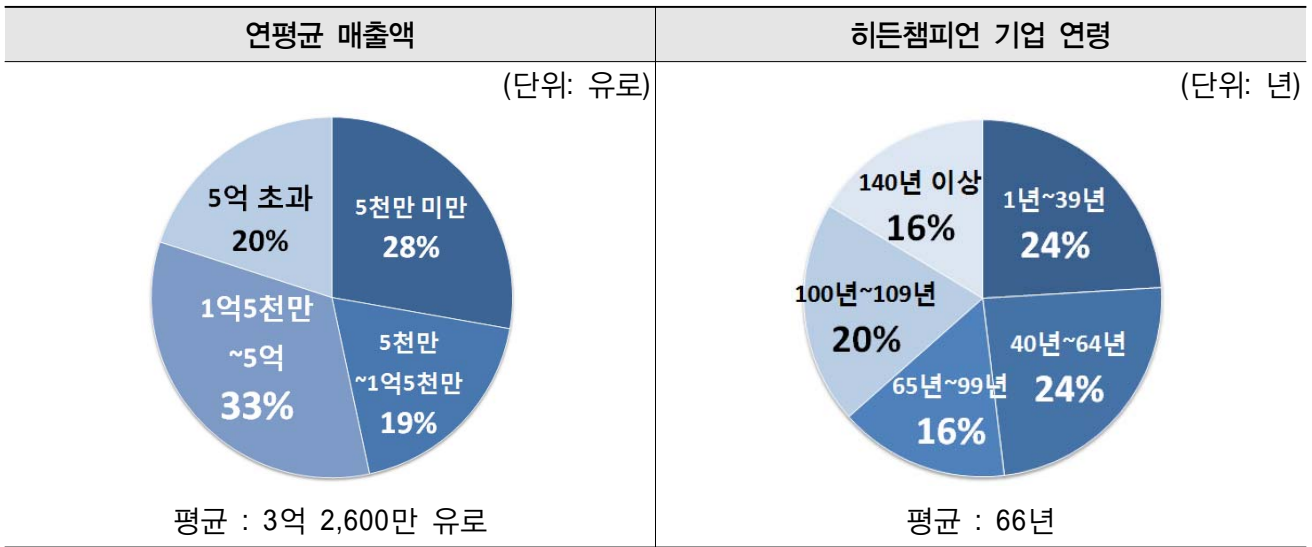
5) 1996년 논문 “Die heimlichen Gewinner: Die Erfolgsstrategien unbekannter Weltmarktfuehrer” (숨은 승자: 익명의 세계시장 주도자의 성공요인)을 통해 처음으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언급, 2007년에 추가 연구 (출처 : 위키피디아)

6) 헤르만 지몬,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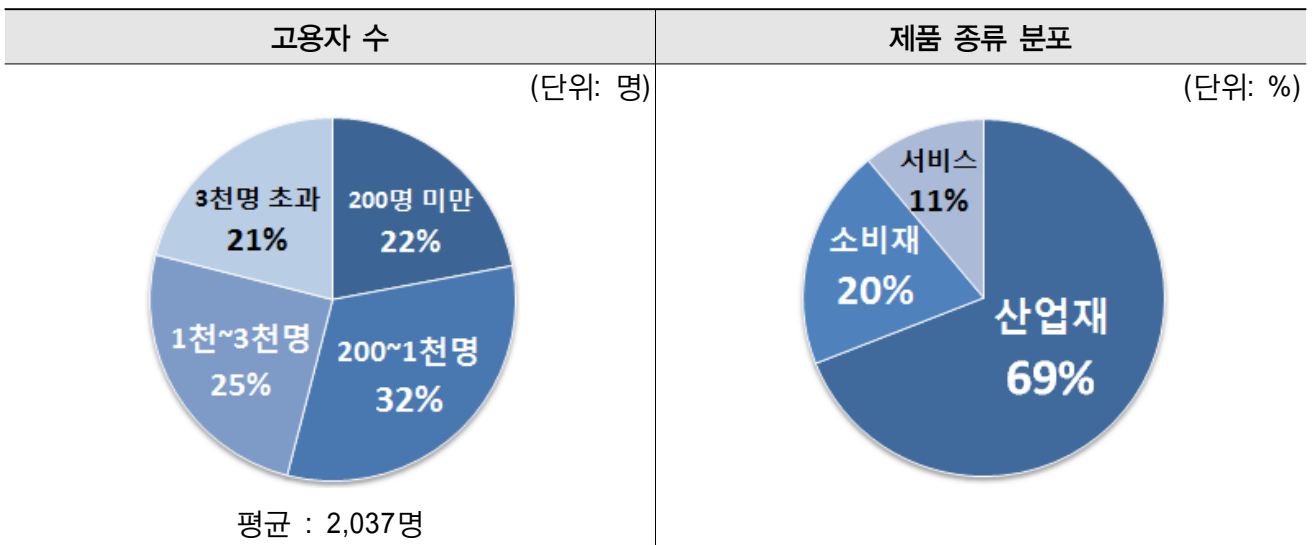
② 특징

□ 히든챔피언의 평균 매출액, 기업 연령, 제품종류, R&D 비중, 수출 비중 등⁷⁾

- 글로벌 2,734개 히든챔피언의 연평균 매출액(1995년~'10년)은 3억 2,600만 유로 (약 4천억 원)이며, 평균 기업연령은 66년
-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평균 매출액 약 4천억 원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준
 - * 우리나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400억~1,500억 원 초과
- 업력이 100년 이상인 기업도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3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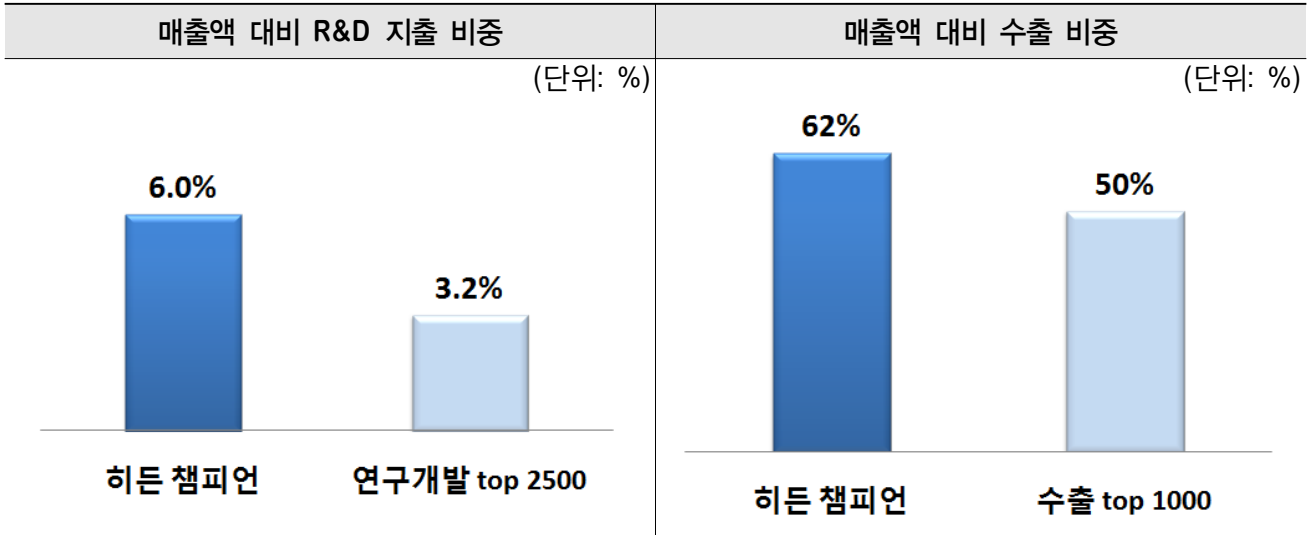
- 글로벌 히든챔피언의 평균 고용자 수는 2,037명이며, 생산 또는 판매 제품은 산업재가 69%로 가장 큰 비중(소비재 20%, 서비스 11%)



7) 헤르만 지몬,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2012)

- * 산업재(B2B) : 최종소비재 생산 위해 중간단계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설비 등의 재화
- * 소비재(B2C) : 최종소비자가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

- 전 세계 히든챔피언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수출 비중이 높은 편
 - R&D 투자 비중(6%)이 세계 R&D투자 상위 2,500개 기업 평균(3.2%)보다 높고, 수출 비중(62%)도 세계 수출 상위 1,000개 기업 평균(50%)보다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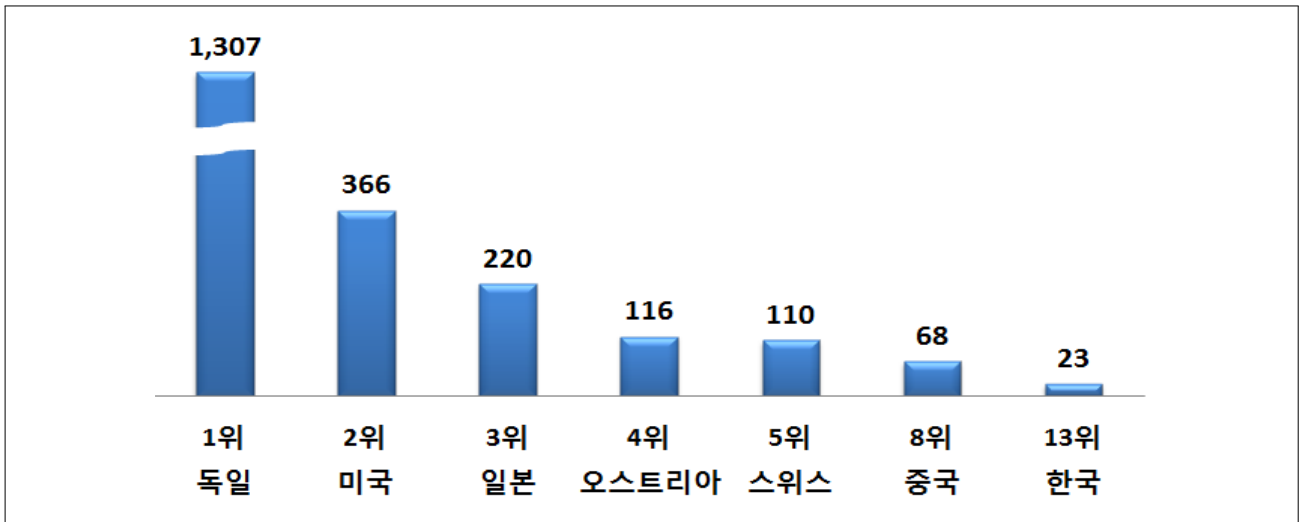


- 히든챔피언의 주요 성공요인은 집중화·세계화·혁신성 등
 - 한 우물 파기(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 글로벌 지향적 경영·마케팅,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 고객 친화적 제품개발·마케팅 등⁸⁾
 - 특히, 히든챔피언의 74.4%가 회사 설립 때부터 수출을 시작했고, 33.9%가 해외 지사*를 설치하는 등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세계화 전략 시행⁹⁾
-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34개 중 48%는 독일 기업
 - 전 세계 2,734개의 히든챔피언이 존재하며, 이 중 48%(1,307개)가 독일 기업이며, 55%(1,506개)가 독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기업

8) 헤르만 지문,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2012) 발췌

9) 중소기업연구원,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2009)

< 국가별 히든챔피언 수 >



* 출처 :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헤르만 지문, 2012)

- 국내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세계 히든챔피언 절반을 보유한 독일의 정책 및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 필요

Ⅲ. 독일의 히든챔피언

① 현황

-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1,307개로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48%를 차지
- 대표 사례는 델로(Delo), 에네르콘(Enercon), SAP, 셰플러(Schaeffler) 그룹 등
 - 델로(세계시장점유율 1위, 매출액 4천4백만 유로)는 산업용 접착제 기업이며, 에네르콘(유럽시장 점유율 1위, 매출액 37억 유로)은 풍력발전설비 전문기업¹⁰⁾
 - 1995년 히든챔피언이었던 SAP(업무용 SW, 매출액 124억 유로), 셰플러 그룹(베어링, 매출액 94억 유로)은 연평균 10% 이상의 급성장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¹¹⁾
 - 독일의 초대형 기업인 지멘스(Siemens)도 벤처 기업에서 출발하여 한때 히든챔피언이었으며,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합병 등을 통해 성장

< 지멘스의 성장과정 >

	벤처기	히든챔피언 → 대기업 성장기	글로벌화기	세계기업화기
기간	1847-1890	1890-1918	1918-1966	1967-현재
전략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합병·파트너십 IPO 진출 신기술 개발	본격적 인수합병 글로벌 시장 진출	세계시장 장악
기업 형태	벤처기업	히든챔피언 → 대기업으로 성장	대기업	글로벌 초대형 기업

* 출처 : 2014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이홍, 2014)

② 정책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외에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은 없음
 - 독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06년부터 추진된 미텔슈탄트 이니셔티브(Mittelstand Initiative)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포함

10) 출처 : 조선비즈 기사, '10년 매출액 기준

11) 헤르만 지문,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2012), '12년 매출액 기준

< 미텔슈탄트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20%→30%)
	상속세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상속 부담 경감
중소기업 설립 시 제도적 절차 간소화	등록절차 간소화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실업자에 대한 창업보조금 제도 실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창업지원 강화

* 출처 :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인프라(김광희, 2013)

-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은 없으며¹²⁾,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집단만을 규제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음¹³⁾
-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가능케 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기업이 되게 하며, 독일은 가업승계 우대하는 상속세제 구축해 지원
 - (가업승계의 중요성)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고, 세대에 걸친 기술 집적을 가능케 하며, 많은 히든챔피언의 특징으로 꼽힘
 - 히든챔피언인 독일 가구부품회사 헤티히(Hettich)는 4대에 걸친 가업승계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기에도 128년째 사업 지속
 - 귀금속 소재회사 헤라우스(Heraeus)도 7세대 가업승계로 164년째 명맥 유지
 - (세율) 피상속인-상속인 관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책정(취득과세방식)
 - 배우자, 자녀, 손자(I등급)에게 상속할 경우 최저세율은 7%(과세표준 7만 5,000유로 이하, 약 1억)이고, 최고세율은 30%(2,600만 유로 이상, 약 300억)

< 독일의 상속세율 >

(단위 : %)

과세표준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7만 5,000 유로 미만	(9천만 원 미만)	7	15	30
7만 5,000~30만 유로	(9천만 원~3억 7천만 원)	11	20	
30만~60만 유로	(3억 7천만 원~7억 5천만 원)	15	25	
60만~600만 유로	(7억 5천만 원~79억 원)	19	30	

12)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2013)

13) 전경련 보도자료(2015)

과세표준		I 등급	II등급	III등급
600만~1,300만 유로	(79억 원~161억 원)	23	35	50
1,300만~2,600만 유로	(161억 원~323억 원)	27	40	
2,600만 유로 이상	(323억 원 이상)	30	43	

- * I 등급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록된 동성파트너
- * II등급 :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
- * III등급 : I, II등급 외의 자
- * 자료 : www.bmjv.de(독일 법무부)

- 부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더라도 여러 명의 자녀(상속인)가 나눠받아 개별 상속인의 상속금액이 적으면 그에 상응하는 낮은 세율 적용
- (세금공제)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유지하고자 하는 고용, 자산, 가업 기간 정도에 따라 상속금액의 85% 또는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지원
 - 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 업종, 선대경영자의 경영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 공제를 지원하며, 공제 한도 제약도 없음
 - 세금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하며 고용 및 사업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상속자가 선택한 공제율(85% 또는 100%)에 따라 의무요건 상이

< 독일 가업승계 세제지원 공제요건 >

요건	85% 공제	100% 공제
사업의 계속성	승계 후 5년간 계속	승계 후 7년간 계속
고용의 계속성	승계 후 5년간 급여총액 = 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5배 이상	승계 후 7년간 급여 총액 = 승사업승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8배 이상
사업자산 비율	비사업용자산 비율이 전체 상속자산의 50% 미만	비사업용자산 비율 전체 상속자산의 10% 미만

- * 상속·증여 시기에 2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며 사후변경은 불가능하여, 기존 선택한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여받은 세제혜택을 안분하여 사후추징
- * 비사업용자산 :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업무무관자산(자동차·항공기·선박) 등
- * 출처 :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대한상의, 2014)

-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 시 기술 분야에 제약을 두지 않으며, 지역별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어 산·학·연 기술협력이 용이한 환경
- (분야 제한 없는 지원) 독일 연방경제기술부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ZIM은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
 - ZIM(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미텔슈탄트 혁신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관 또는 대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 독일 ZIM 운영방식 >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방식
Individual Projects	1개 중소기업 * 연매출 5천만 유로 (624억 원) 이하	보조금 지원 (최대 38만 유로, 4억 7천만 원)
Cooperaton Projects	2개 중소기업 이상 또는 중소기업·연구기관 협업 * 외국기업과의 협업도 가능	
Cooperation Networks	6개 이상의 중소기업 * 연구기관, 대기업 협업 가능	

* 출처 :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독일 BMWi, 2015)

- 특정 기술 및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SW, ICT, 나노, 섬유,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 사례 발생

< 독일 ZIM 성공사례 >

(QAware社) 유통과정 실시간 제어 SW	(IPDD社 외 2곳 합작) 전기이륜차	(Human Solutions社) 3D 바디스캔
		
개발 후 연매출 20% 증가	20% 경량화, 최고속도 65km/h	패션·의료용 인체스캐너

* 출처 : www.zim-bmwi.de(독일 연방경제기술부)

- (클러스터 기술협력) 독일 전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산·학·연 간 긴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성 제고에도 기여
- '13년 기준 독일 전역에 327개¹⁴⁾의 산업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대학·연구소 간 유기적인 기술협력 네트워크 형성
- 보쉬, BMW, 프라운호퍼가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1990년대 경기 침체 이후 '00년부터 클러스터*를 운영해 '12년 EU 지역별 혁신지수 1위 달성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입된 선진 기술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14) 중기청·산업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2014)

< 바덴뷔르템베르크 자동차 클러스터 >

대표기업	보쉬(Bosch), 다임러(Daimler), 뷔르트(wuerth) 등
구성	총 826개 기업 * 중소기업 85%, 대기업 12%, 대학·연구기관 2%, 기타 1%
기술분야	자동차, IT, 기업용 SW, 경량화, 신소재 등

* 출처 : www.zim-bmwi.de('14.11 기준)

- 판로개척 시 금융지원·정보제공 등의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 활용하여 수출·자회사 설립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 (지원정책) 금융지원, 시장정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기업들의 수출·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들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

< 독일 판로개척 지원제도 >

지역	주요내용
바덴 뷔르템베르크	ERP 수출자금제공 · 자국 수출기업에 최대 1억 유로(약 1,200억 원) 대출
	수출상담 · 중소기업(KMU)에 해외 시장 발굴 전문 상담 지원 · 일부 국가 수출기업은 전년 매출액 하한(5백만 유로) 존재 *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바이에른	KfW-기업대출 · 중소기업에 최대 2,500만 유로(약 300억 원) 지원

* 출처 :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독일 BMWi, 2015)

- (지리적 이점)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해 프랑스, 벨기에 등 9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국 중심 자회사 설립 통한 판로개척 용이

< 히든챔피언 케르허(Kärcher)의 세계화 과정 >

연도	지역
1962~1981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벨기에 등 9개 지사
1982~2001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등 29개 지사
2002~2011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37개 지사

* 출처 :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헤르만 지몬, 2012)

* 케르허(Kärcher) : 1935년 설립, 고압 청소기 부문 세계시장 선도기업

IV. 한국 히든챔피언 육성방안

1 현황

-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를 부과하고, 이분법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총 47개 법령에 178개의 성장걸림돌 존재
 - (규모별 규제) 중소기업 졸업 직후 12개, 자산 2조 원 이상 16개, 5조 원 이상 30개 증가 등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98개 규제(33개 법령) 증가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출자 등의 추가적인 규제 적용
 - *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일률적으로 대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 시 제약 존재(사업축소·확장자제 등)

|| 기업 규모별 규제 조사 ||

※ **규제기준** :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 상법 내 기업 권리제한·의무부과사항

* 상법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규제이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 검토

* 상법의 규제정보포털 미등록 사유 : 국민의 일반적인 민사·상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규제 정의상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에 인정되지 않음

※ **조사방법** : 규제정보포털 키워드 검색(대기업, 2조 원, 자산총액 등) 및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 별도 조사,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정보 활용

※ **조사결과** :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총 33개 법령 98개 규제 존재

자산총액 범위	증가분	규제 예시
10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28	공정거래법 제8조, 상법 제542조의10 등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중견기업 진입)	12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조의3, 상생법 제32조, 제35조 등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16	상법 제542조의7, 제542조의9,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등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30	공정거래법 제8조의3, 뿌리산업진흥법 제15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등
10조 원 이상	12	뉴스통신진흥법 제7조, 신문진흥법 제18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3조 등

- (이분법적 지원) 중견기업 진입과 동시에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제도는 분야별로 세제 38개, 수출·판로 10개, R&D 9개 등 80개(21개 법령)
- 중소기업졸업 유예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조세부담 증대¹⁵⁾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활용률 : 중소기업 64.4%, 유예기업 71.4%, 대기업 43.8%

< 중견기업 진입 시 중단·축소되는 지원제도 >

구분	개수	대표 제도
조세	38	특별물품관세면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제 혜택 등
금융	7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
R&D·정보화	9	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등
인력	9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등
수출·판로	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등
기타	7	장애인고용부담금면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계	80	

* 출처 : 기업성장 친화적 법령정비 방안연구(중소기업연구원, 2014)

- 가업상속 세율이 독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상속세 공제여부 및 공제한도가 기업의 규모나 업종, 선대경영인의 경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세율) 유산총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유산과세방식)되며, 자녀 1명에 30억 원을 상속할 경우 독일은 19%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50% 부과
- 피상속인의 재산이 크면 개별 상속금액이 적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
- 배우자·자녀 등에 가업상속 시 독일의 최고세율은 상속받는 사람 기준 323억 원 이상 30%이나,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상속총액 기준 30억 원 이상 50%

< 한국의 상속세율 >

(단위 :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억 원~5억 원	5억 원~10억 원	10억 원~30억 원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 출처 : 국세청

- (세제지원) 기업규모, 업종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독일은 한도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공제금액 한도(200~500억 원) 존재

15)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2013)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결정

< 한국의 가업승계 공제요건 >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 피상속인 :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 등 · 상속인 : 상속자 1인 전부 상속,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 100% · 공제한도 : 가업경영기간별 최고 500억 원 *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
사후의무 이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유지 : 상속 후 10년 이상 가업 유지, 업종 전환 금지(관련법상 세분류 내에서만 허용),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고용 : 매년 상속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 유지,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 기타 : 가업용 자산 20%(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지분 100% 유지

* 출처 : 한눈에 알아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핸드북(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

- 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 중 제조업, 건설업 등 5개는 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은 불가

< 가업승계 공제제도 적용 업종 >

구분	업종
적용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미적용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 출처 : 가업승계 A에서 Z까지(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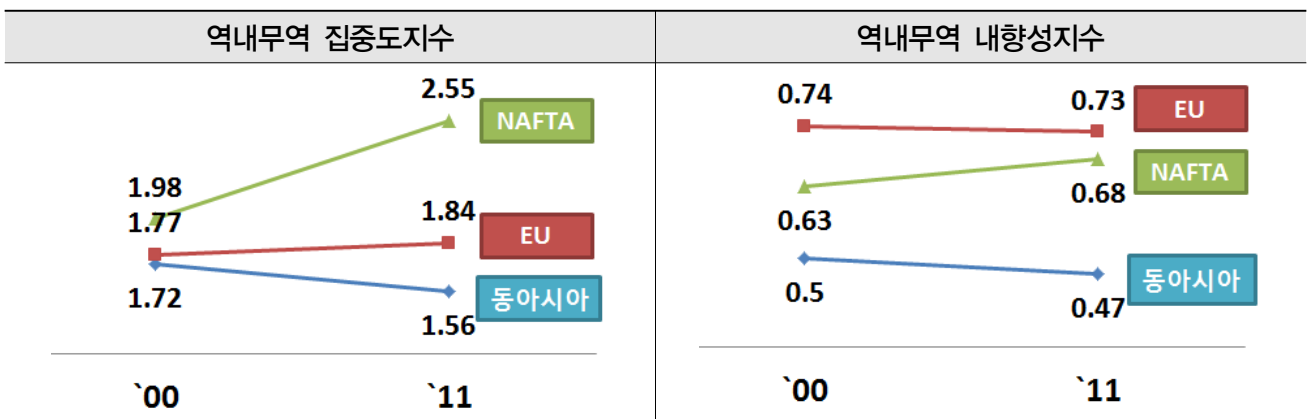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세액공제를 통해 혁신기술 개발, 기업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또는 일부 기업에 혜택을 한정
 - (POSITIVE R&D지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나, 지원 대상을 11개 분야 48개 기술에 한정하여 현장과의 괴리 존재
 - 신성장동력 11개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지원분야는 1~2년 단위로 개정
 - 지원업종*을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으로 규정하고, 1~2년마다 개정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 지원 부족
 - * 조특법 10조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 :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신소재 나노 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SW 등

- (기술이전 유인제도 미흡) 대·중소기업 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중요하나, 이를 활성화할 인센티브 부족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37,079건 중 58.1%(21,540건)만이 사업화되며, 휴먼 특허의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기술 고도화 기여 가능¹⁶⁾
 - 현재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을 할 때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할 유인 부족
 - * 조세특례제한법 12조 :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해외시장정보·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할 중국·일본과의 역내무역 감소 추세

- (지원정책) 정부·지자체 등에서 해외시장정보, 해외박람회 참가, 마케팅·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지원포털 통해 정책정보 제공
- (지리적 환경) 유럽의 심장부인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고립도가 높은 편
 - * 독일은 1,000km 반경에 16개국 이 있으나, 한국은 중국(953km), 일본(1,154km) 외에 베트남 2,745km, 호주 8,426km, 독일 8,136km, 미국 11,176km 등 지리적 고립도 높음
 - * 국가별 수도 기준으로 <http://www.distancecalculator.net>에서 거리 계산
- (역내무역) 중국의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은 EU와 NAFTA와 달리 역내무역의 편향성이 감소하는 추세

< 지역별 역내무역 집중도·내향성 비교 >



* 집중도지수·내향성지수는 무역의 역내외 편향성을 나타내며, 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역내편향적, 1보다 작으면 역외편향적(내향성지수는 0에 가까우면 중립적, 0보다 클수록 역내편향적)
 * 출처 : 동아시아 무역, 중간재 위주, 낮은 내향성 극복 필요(한국무역협회, 2013)

16)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전경련, 2015)

② 문제점

- 우리나라의 히든챔피언 기업은 23개이며, 매출액, 업력, 수출 비중, R&D 비중 등이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평균치에 비해 저조한 편
- 헤르만 지몬에 따르면 한국의 히든챔피언은 23개로 전 세계 히든챔피언(2,734개)의 0.8%에 불과하며, 독일 히든챔피언(1,307개)의 57분의 1 수준
- 한국 히든챔피언은 매출액, 업력, 수출 비중, 연구개발비 비중, 근로자 수 등이 전 세계 히든챔피언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

< 전 세계 vs 한국 히든챔피언 특징 비교 >

	전 세계(A)	한국(B)	비교(A/B)
개수	2,734개	23개	-
매출액	3억 2,600만 유로 (약 4,241억 원)	1,842억 원	2.30
업력	66년	32년	2.06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62%	26.8%	2.31
매출액 대비 R&D 비중	6%	1.8%	3.33
근로자 수	2,037명	408명	4.99

* 출처 : 2014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이홍, 2014)

- 정부는 '14.10월 히든챔피언 선정·지원에 대한 육성정책을 발표했으나,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은 세계적 기준과 상이
 - 주요 과제는 후보기업 지원, 기술혁신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구성
 - 산업부 및 중기청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합해 히든챔피언을 선정·지원 하고, 히든챔피언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집대성
- *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산업부) 글로벌 전문기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과제 >

후보기업 지원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성장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	최대 75억 원 지원, 지역특화 맞춤형 지원 제공 등
판로개척 지원	전략 수립 및 현지 투자 등에 최대 3.5억 원 지원 등
핵심인재 지원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5년간 재직 시 보상제도 운영 등
육성인프라 구축	정책 컨트롤타워인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 운영 등

* 출처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중기청·산업부, 2014)

- 우리나라 정부는 헤르만 지몬이 정립한 조건(① 세계시장 지배력, ② 중간규모 기업군)에 4가지를 추가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정립

<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

조건	판단기준	글로벌기준 비교
① 세계시장 지배력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HSK 10단위)	수정
② 중간규모 기업군	3년 평균 매출액 1백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수정
③ 집중적 연구개발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 (3년 평균)	신설
④ 글로벌화 지향성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3년 평균)	신설
⑤ 인재육성 친화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	신설
⑥ 독자적 성장기반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 50% 미만	신설

* 출처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중기청·산업부, 2014)

- ‘한국형 히든챔피언’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세계적 기준과 상이
 - 정부는 히든챔피언의 정성적 개념인 Hidden을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 50억 유로 이하’로 잘못 해석하여,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 헤르만 지몬은 히든챔피언 규모 정의를 독일 중소기업 범위(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한화 약 6백억 원)를 100배 상회하는 50억 유로로 명시
 -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63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761억 원)은 전 세계 히든챔피언(약 4천억 원)보다 현저히 적어 매출 기준에 왜곡이 있음을 시사

< 전 세계 vs 한국형 히든챔피언 특징 비교 >

	전 세계(A)	한국형(C)	비교(A/C)
개수	2,734개	63개	-
매출액	3억 2,600만 유로 (약 4,241억 원)	761억 원	5.57
업력	66년	18년	3.67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62%	50.8%	1.22
매출액 대비 R&D 비중	6%	6.7%	0.90
근로자 수	2,037명	207명	9..84

* 출처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중기청·산업부, 2014)

- 피터팬 증후군, 성장단절, 가업승계 곤란, 기술혁신 저조 등의 현상 발생
 - (피터팬 증후군) 국내 기업들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대기업 규제 기준인 자산 규모에서 성장을 정체시키려는 현상 발생

- 중소-중견 : 중견기업 3,846개 중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곳은 '13년 기준 76개이고,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 희망
 - * 중견→중소 회귀 현황(개, 김한표 의원) : ('10→'11) 91 → ('11→'12) 50 → ('12→'13) 76
- 대기업 : 규제 기준인 2조 원 미만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56개 기업 집단 중 15개가 '08년 규제 기준이 5조 원으로 상향된 후 자산 규모 확대

< '07년 기준 자산 1조 이상 2조 미만 56개 기업집단의 자산 변동 추이 >



* 출처 : 전경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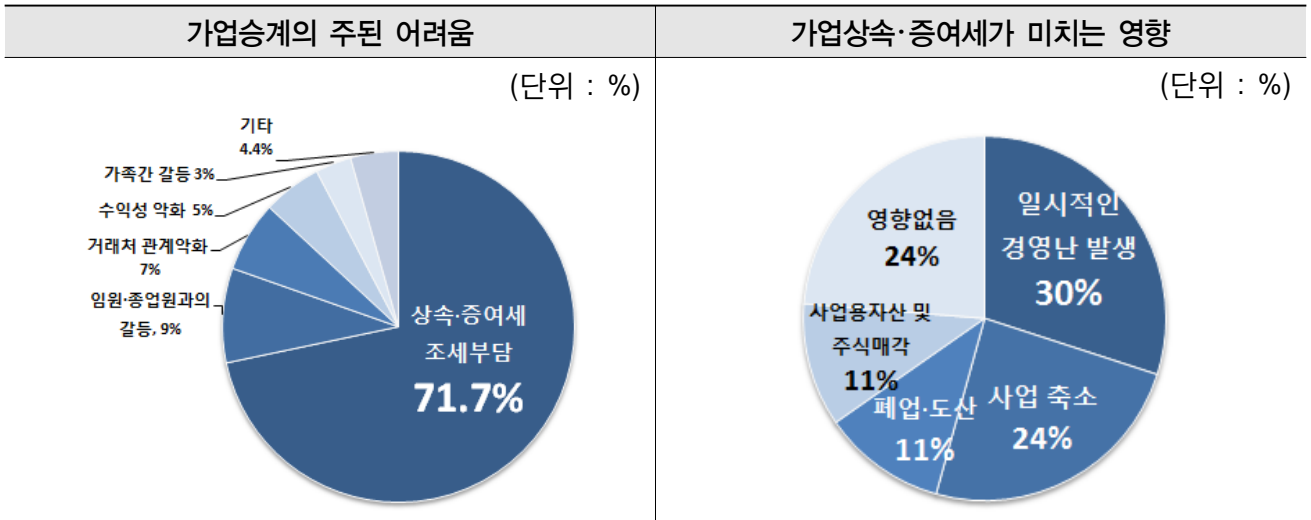
- (성장단절) '10년에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132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잔류기업 (13,372개)에 비해 성장성·수익성 크게 낮음

< 중견기업 진입기업 vs 중소기업 잔류기업 성장성·수익성 비교 >

성장성	'10년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07~'09) 16.7%→('10~'12) 5.9%로 급감했으나, 중소 잔류기업은 동기간 8.0%→10.3%로 증가
수익성	중소 잔류기업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07~'09) 10.4%→('10~'12) 2.2%로 감소했으나, '10년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은 동기간 36.3%→10.3%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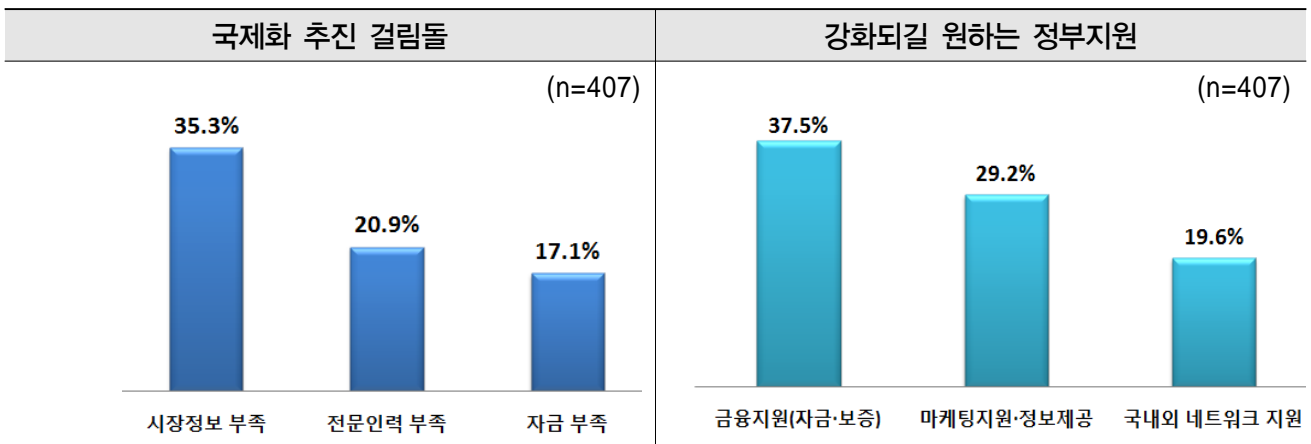
* 출처 : 기업성장 친화적 법령정비 방안연구(중소기업연구원, 2014)

- (가업승계 곤란) 가업승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강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패사례 발생
- 기업들에게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 사업 축소, 폐업·도산 등을 경험



* 출처 : 2013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14.2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였던 쓰리세븐(1975년 설립)은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세 1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매각 및 경영권 상실
- (기술혁신 저조) 전자정보·의료·바이오 등 10개 분야 120개 전략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은 전무, 선도그룹 31%, 추격그룹이 69%의 분포¹⁷⁾
 - * 선도그룹 : 기술수준이 세계 최고기술의 80% 초과, 추격그룹 : 기술수준이 60%~80% 이하
- (판로개척 애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판로개척에 있어 시장 정보, 전문 인력,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기를 원함



* 출처 : 중소기업의 국제화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대한상의, '12)

17)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미래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3 개선방안

-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피터팬 증후군·성장단절 문제 해소
 - ‘소규모 히든챔피언’ → ‘히든챔피언’ → ‘챔피언’으로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걸림돌을 제거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 조성
 - * (Small Hidden Champion) 히든챔피언 중 매출액 5억 달러 이하인 작은 규모의 기업, (Hidden Champion) 매출액 5억 달러 이상 50억 유로 이하의 히든챔피언, (Big Champion) 매출액 50억 유로 이상의 수출지향적 대기업으로 히든챔피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기업유형¹⁸⁾
 - 자산 규모별로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모별 규제를 폐지하고,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지원제도를 성장 유인형 지원제도로 개편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기존 3년)을 5년으로 확대하고, R&D 규모가 업계 평균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는 지원 지속 등의 적극적인 성장 유인 방안 마련
 - * 매출액·자산총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를 상회함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이 갑자기 축소·중단됨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¹⁹⁾
- 가업승계 통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제 개편과 기업 업력·규모 제약 철폐 등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변경,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상속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제 개편
 - 주요국과 같이 업종 제한 규정을 없애고, 피상속자의 업력 및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의 영속성 확보 지원

<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국제비교 >

	업종제한 여부	피상속자 최소 업력 요건
한국	열거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	10년
독일	없음	없음
일본	포괄주의 (자산관리회사 등 일부 업종 배제)	없음
영국	없음	2년

* 출처 : 대한상의,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14.3월)

18) 이흥,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2014)

19) 중소기업청, 알게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15)

□ 혁신기술 R&D 및 기술협력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 세액공제의 열거주의식 규정 개편, 대기업의 기술이전 유인제도 등 마련²⁰⁾

-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기술 선정시, 기업들이 산업 트렌드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신성장동력 기술을 고려

|| 기업에서 수행 중인 주요 신성장동력 기술 ||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 ESS(Energy Storage System), IT 기반 헬스케어, 3D프린팅 유통플랫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린 디젤 자동차용 부품 등

- 포괄주의식(Negative System)의 R&D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공
-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는 기술이전 세제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시에만 국한

□ 해외 시장정보 제공 및 수출 경쟁력 강화로 기업들의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애로사항인 해외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및 해외 마케팅·컨설팅 적극 지원 필요

* 세계화 추진 걸림돌('12, 대한상의) : 정보부족 35.3%, 전문인력부족 20.9%, 자금부족 17.1%

- FTA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관세·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 제고 및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 마련 필요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히든챔피언 기준(매출액 50억 유로, 약 6조 원 이하)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국한시키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정의 및 정책 개선
- 히든챔피언 기업의 개수를 늘리는 수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힘든 챌린저'를 적극 발굴하고, 히든챔피언 이후 성장사다리 구축

20) 전경련,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2015)

< 전 세계 vs 한국형 히든챔피언 현황·경영환경 비교표 >

		전 세계 히든챔피언	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율) 세계시장 1~3위 또는 소속대륙 1위 · (매출액) 50억 유로 이하 · (인지도) 낮은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율) 세계시장 1~3위 · (매출액) 1백억 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R&D) 매출액 대비 비중 2%이상 · (수출) 매출액 대비 비중 20%이상 ·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 ·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미만
규모적성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3억 2,600만 유로(약 4천억 원) * 수출 비중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761억 원 * 수출 비중 50.8%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집단 및 자산 규모별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별 규제 및 이분법적 지원
역사적성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연령 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연령 18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 취득과세방식, 배우자·자녀 상속 시 최고세율은 300억 이상 30% · 세제지원 : 업종이나 대·중소기업 차별 없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 유산과세방식, 배우자·자녀 상속 시 최고세율은 30억 초과 50% · 세제지원 : 일부 업종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기술적성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중 6.7%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술·분야 제한 없이 R&D 지원 · 327개의 클러스터 운영 통해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거주의 방식 신성장동력 조세 지원 · 대·중소 기술이전 유인제도 미흡

< 히든챔피언과 관련한 국내 주요 지원제도 >

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업 수
중 기 청	World-Class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4백억~1조 원(SW, 엔지니어링, 디자인업은 1백억 원 이상) ·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2% 이상 또는 5년간 매출증가율 15% 이상 ·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연간 15억 원, 3~5년) · 금융지원(금융기관별 강소기업 프로그램 자동 편입) · 컨설팅·마케팅 	156개 (‘11~‘14년)
	글로벌 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100억~1000억 원 · 수출 비중 10% 이상 · 3년간 연간 수출 5백만~5천만 불 최소 1회 달성 ·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 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 (최대 3년간 1억 원) · R&D(최대 2년간 10억 원) · 수출금융(최대 30억 원) 	380개 (‘11~‘14년)
산 업 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직수출액 2천만 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달성한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및 맞춤형 시책 연계지원 	68개 (‘14년)
	우수기술 연구센터 (ATC)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 시장 점유율 10위 이내인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정부출연금 5억 이내 (5년간) 	258개 (‘03~‘13년)
수 출 입 은 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 원~1조 원, 수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우대(0.5%p), 환위험 컨설팅 등 	301개 (‘13년 말 기준)

* 출처 : 2014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이홍, 2014) 일부 업데이트

참고문헌

- 김광희,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인프라」, 2013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2014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의 국제화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2012
- 미래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2015
- 이홍,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기준설정 연구」, 2014
- 전경련,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2015
- 전경련,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기준, 경제 성장에 따라 10조원으로 상향 필요」, 2015
- 중소기업연구원,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2009
-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2013
-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성장친화적 법령정비 방안연구」, 2014
- 중소기업청·산업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2014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한눈에 알아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핸드북」, 2015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2015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2013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014
- 중소기업청, 「알게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5
- 포스코경영연구원, 「위기 탈출의 해법, 독일 제조업에서 배운다」, 2012
- 한국무역협회, 「동아시아 무역, 중간재 위주, 낮은 내향성 극복 필요」, 2013
- 헤르만 지몬, 「히든챔피언 글로벌 원정대」, 2012
- BMW,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2015
- www.zim-bmwi.de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 www.bmjv.de (독일 법무부)